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 호 848

제안일자 : 2023. 07. 03. 제 안 자 : 주택공가위워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 제3조제3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.
-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'최저주거기준 확대'는 주거약자법 제8조에서 주 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'강화된 최저주거기준'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바,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일 부 자구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호 중 "법 제8조의 주거기준 적용 및 제9조의 편의시설"을 "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"로 수정함.
-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"확대,"를 "적용 확대 및"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호 중 "법 제8조의 주거기준 적용 및 제9조의 편의시설"을 "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"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"확대,"를 "적용 확대 및"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 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	제3조(책무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3.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,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	3	3
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확대, 개선방안과 법 제9 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 대에 대한 사항	4 <u>적용 확대 및</u>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	5.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(주거실태 조사) ① (생 략)	제5조(주거실태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	제5조(주거실태 조사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	4. (개정안과 같음)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	5. (개정안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"법 제9조의 편의시설"을 "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 하게 제공되고, <u>법 제9조의 편</u> 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 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	3, <u>법 제8조의 최저</u> , <u>법 제8조의 최저</u> 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 의 편의시설
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 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5조(주거실태 조사) ① (생 략)	제5조(주거실태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

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

 수요에 관한 사항

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 ② ~ ④ (생 략)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